

2018년 부평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 우리 구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7,37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0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314억원)보다 2,062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8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35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8억원입니다.

- ◆ 우리 구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66%(18.9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9.55%(35.83%)입니다.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우리 구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5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전국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살림규모는 큰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체세입보다 이전재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며, 향후 지방자치분권을 위하여 자체세입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 ※유사단체 : 재정자립도 28.65%(23.64%), 재정자주도 39.97%(34.95%)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cbp.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 당 자 : 기획조정실 홍진아(032-509-6080)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평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7,376	6,342	1,033	5,314	4,663	651
	세출예산	7,376	6,342	1,033	5,314	4,663	651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2.66 (18.95)	22.94 (19.69)	△0.28 (△0.74)	28.65 (23.64)	29.1 (24.77)	△0.45 (△1.13)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9.55 (35.83)	39.79 (36.54)	△0.24 (△0.71)	39.97 (34.95)	41.14 (36.81)	△1.17 (△1.86)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5	16	△1	24	23	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21개 단체) : 인천(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대구(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광주(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서구, 유성구), 울산남구

▶ 유사 지방자치단체 구분 기준 : 2017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16년 인구규모, 최근5년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시·군)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부평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37,555	687,546	-	24,557	25,45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08,933	565,103	594,473	634,219	737,55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0,415	100.0	536,429	100.0	562,383	100.0	596,451	100.0	687,546	100.0
지방세	72,365	14.76	74,493	13.8	79,544	14.14	81,404	13.65	86,097	12.52
세외수입	29,689	6.05	27,935	5.21	33,934	6.03	36,061	6.05	44,175	6.43
지방교부세	6,500	1.33	6,500	1.21	6,500	1.16	6,500	1.09	7,500	1.09
조정교부금 등	66,000	13.46	78,000	14.54	80,000	14.23	94,000	15.76	108,588	15.79
보조금	300,068	61.19	331,230	61.75	344,835	61.32	359,150	60.21	415,649	60.4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793	3.22	18,270	3.41	17,570	3.12	19,337	3.24	25,537	3.7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부평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37,555	687,546	-	24,557	25,45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08,933	565,103	594,473	634,219	737,55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0,415	100.0	536,429	100.0	562,383	100.0	596,451	100.0	687,546	100.0
일반공공행정	31,551	6.43	32,370	6.03	29,433	5.23	27,263	4.57	33,883	4.93
공공질서 및 안전	1,898	0.39	2,780	0.52	5,147	0.92	5,392	0.90	8,249	1.20
교육	11,093	2.26	5,537	1.03	6,247	1.11	6,730	1.13	7,129	1.04
문화 및 관광	16,949	3.46	15,479	2.89	17,630	3.13	18,377	3.08	20,109	2.92
환경 보호	17,603	3.59	18,090	3.37	20,179	3.59	24,197	4.06	27,659	4.02
사회복지	298,686	60.90	349,086	65.08	360,615	64.12	381,510	63.96	441,383	64.20
보건	13,269	2.71	15,038	2.80	16,419	2.92	18,660	3.13	20,853	3.03
농림해양수산	1,105	0.23	1,031	0.19	892	0.16	1,345	0.23	2,237	0.33
산업·중소기업	1,166	0.24	886	0.17	1,275	0.23	1,152	0.19	2,771	0.40
수송 및 교통	6,419	1.31	7,043	1.31	8,240	1.47	7,986	1.34	8,830	1.28
국토 및 지역개발	14,032	2.86	8,172	1.52	8,971	1.60	10,428	1.75	12,561	1.83
예비비	5,030	1.03	5,589	1.04	7,898	1.40	8,263	1.39	9,228	1.34
기타	71,615	14.60	75,328	14.04	79,438	14.13	85,147	14.28	92,654	13.4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부평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657,803	764,614	106,811	16.24
부평구	634,219	737,555	103,336	16.29
공사·공단	11,495	13,745	2,250	19.57
출자·출연기관	12,089	13,314	1,225	10.1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단(1개) : 부평구시설관리공단
- ▶ 출연기관(1개) : 부평구문화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부평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66%(18.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2.66 (18.95)	687,546 (687,546)	155,809 (130,272)	531,737 (531,737)	-	- (25,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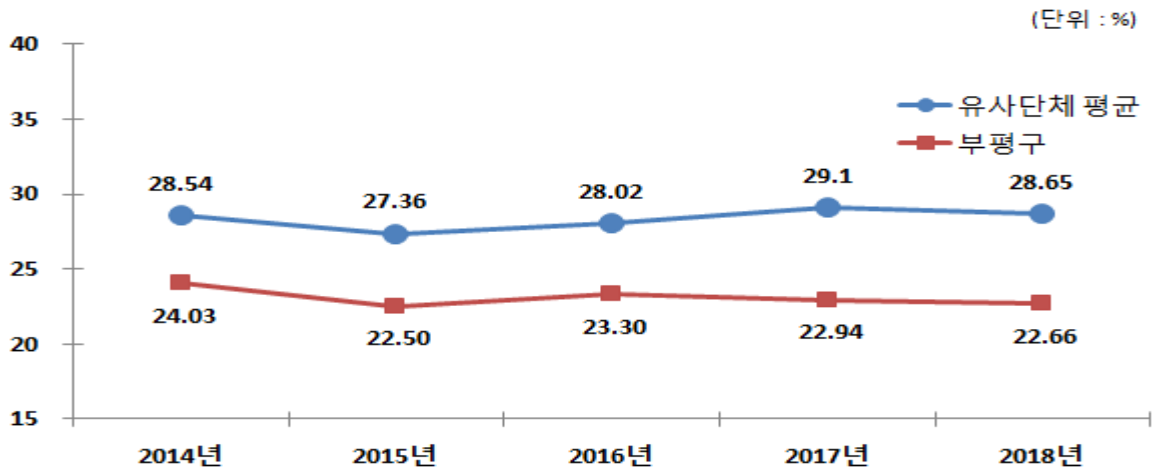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4.03 (20.81)	22.50 (19.09)	23.30 (20.18)	22.94 (19.69)	22.66 (18.9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2018년 부평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28%(0.74%) 감소하여 전국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구 도심권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자체세입 증가율이 미미한 반면, 국가 위임사무인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4.2%를 차지하는 등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부평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9.55%(35.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9.55 (35.83)	687,546 (687,546)	271,897 (246,360)	415,649 (415,649)	-	- (25,537)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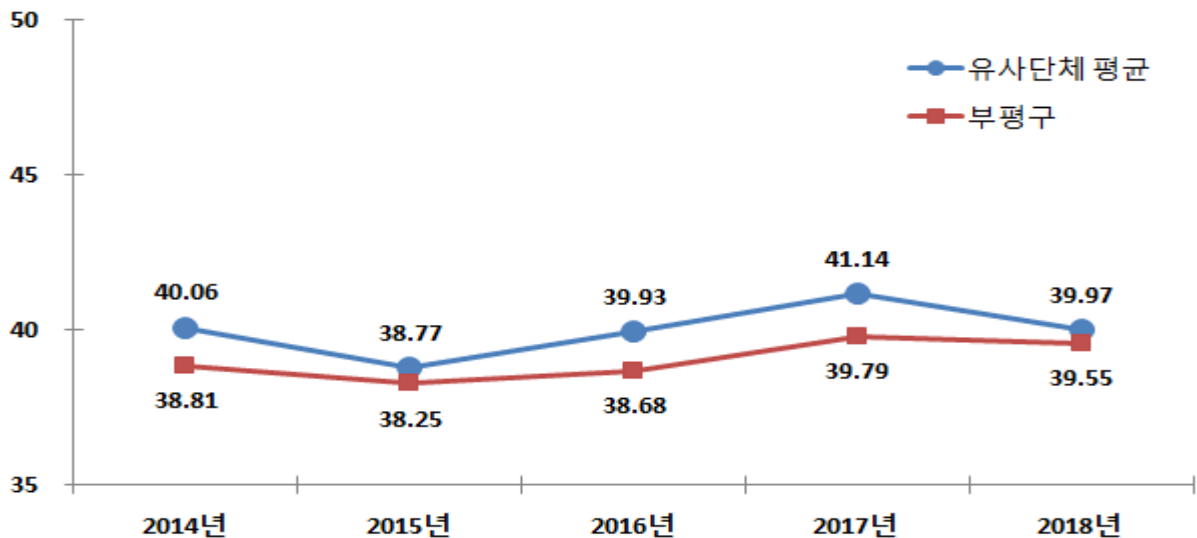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8.81 (35.59)	38.25 (34.85)	38.68 (35.56)	39.79 (36.54)	39.55 (35.8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2018년 부평구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0.24%(0.71%) 감소하여 전국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구 도심권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교부금) 증가율이 미미한 반면, 국가위임사무인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4.2%를 차지하는 등 보조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부평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74,808	705,903	365	805	440	33,072	706,343	-31,534	1,538
일반회계	662,009	680,174	-	405	405	20,200	680,579	-18,570	1,630
기타 특별회계	11,630	24,505	-	-	-	12,872	24,505	-12,875	-3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1,169	1,224	365	400	35	-	1,259	-90	-90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7,315	-19,979	-22,769	-25,614	-31,534
통합재정수지 2	-1,047	3,131	2,081	1,636	1,538

- ☞ 통합재정수지 1이 적자규모로 산출되는 주된 이유는 세입예산 중 보전수입(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등)이 통합재정 세입예산에 미포함되나, 세출 예산에서는 사업 예산으로 편성 포함됨에 따라 통합재정 수지가 적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 ☞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1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부평구는 1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평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86,392	858,188	929,004	984,582	1,021,332	4,579,498	6.80%
자 체 수 입	141,637	146,511	152,200	158,044	164,343	762,735	3.80%
이 전 수 입	579,593	642,854	704,723	752,057	779,610	3,458,837	7.70%
지 방 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163	68,823	72,081	74,481	77,379	357,927	4.40%
세 출	786,392	858,188	929,004	984,582	1,021,332	4,579,498	6.80%
경 상 지 출	136,949	140,182	143,457	146,878	149,701	717,167	2.30%
사 업 수 요	649,442	718,005	785,547	837,704	871,632	3,862,330	7.6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부평구청 : <http://www.icbp.go.kr> → 재정 → 재정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4-2. 성인지 예산현황

-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평구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55	156,97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	83,04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8	70,901
자치단체 특화사업	4	3,026

- ▶ 20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부평구청 : <http://www.icbp.go.kr> → 재정 → 재정현황 → 성인지예산서 → 2018검색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가정양육수당지원, 아이돌봄지원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평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운영 등이 해당됩니다.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립,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부평구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712.103	665	모델3안 준용

▶ 20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제안주체 (지역위원회)
총 액		665	
산곡3동	선포산 둘레길벽화 교체	13	산곡3동
공원녹지과	사랑샘공원 안전 재정비	10	삼산1동
평생학습과	청소년진로박람회 보완	20	청소년 예산학교
공원녹지과	신트리공원 동편관목 보수 및 펜스 설치	10	부평4동
공원녹지과	칠엽수 쉽터 정비 및 서구 경계지역 꽃나무 화단 조성	10	청천1동
공원녹지과	만월어린이공원 환경 정비 및 안내판 설치	5	부평6동
공원녹지과	사근공원 내 공중화장실 보수	250	갈산2동
공원녹지과	화단 토사 흘러내림 방지 화단 조성	15	청천2동
공원녹지과	후정공원 주민참여공간 확대	40	삼산1동
공원녹지과	십정녹지 홍보 LED 설치	20	십정1동
공원녹지과	삼산 두레농악 알리미	2	삼산1동
공원녹지과	깨끗한 광장 및 공원 도색	10	부평3동
공원녹지과	공원 주변 진출입로 경계석(턱 낮춤) 정비 및 블라드 설치	30	갈산2동
공원녹지과	애향공원 및 백운광장 꽃나무 식재	40	부평3동
기후변화대응과 도로과	군부대 철로변 배수로 정비 및 안전펜스 설치사업	15	부개1동
공원녹지과	호명사 담벼락 화단 증설 개선	5	부평구청 홈페이지
공원녹지과	웰빙녹지공원 쉽터 조성	20	부평구청 홈페이지
공원녹지과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수 보호틀 설치	5	부평6동
공원녹지과 도로과	안전하고 걷고 싶은 길 만들기	42	산곡4동
도로과	인도 보도블럭 교체	50	십정2동
기후변화대응과 미래도시과 환경보전과	구산천 환경 정비	20	일신동
도로과 공원녹지과	풍림아파트 상가 앞 가로수 경계석 및 도로 정비	3	일신동
공원녹지과 도로과	안전하고 쾌적하게 걷고 싶은 거리 조성	30	삼산2동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부평구청 : <http://www.icbp.go.kr> → 재정 → 주민참여예산방

4-4. 성과계획서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평구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 계	11	67	199	176	712,103	617,475	94,627
의회사무국	1	1	4	2	1,446	1,331	115
비전기획단	1	1	2	3	915	1,021	△107
기획조정실	1	1	3	4	18,144	16,199	1,945
감사관	1	1	4	1	231	188	43
홍보담당관	1	1	3	2	2,316	2,182	134
자치행정국	1	9	30	32	100,927	87,755	13,172
경제복지국	1	17	53	50	423,969	364,675	59,294
문화환경국	1	22	55	39	77,503	66,929	10,575
도시관리국	1	10	32	31	59,303	52,533	6,769
보건소	1	3	11	11	21,120	18,906	2,214
청천보건지소	1	1	2	1	457	417	40
읍면동	-	-	-	-	5,770	5,338	43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2.66 (18.95)	39.55 (35.83)	64.2	13.76	71.68	57.23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총액) (A)	예산 편성액 (B)	차 액 (B-A)	비고 (산출기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80	58	-	총액한도 내에서 운영하며 산정방법은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35
	부단체장 외		2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1	231	△40	전년도 기준액, 정책사업결산액 등을 기초로 산정된 기준액에서 약 15% 절감 편성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59	115	-	총액한도 내에서 운영하며 산정방법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의 평균액 × (1 + 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의 평균액 × (1 + 0.05)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1		
	의원국외여비		63		
지방보조금		7,545	3,486	△4,059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대비 절감 편성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247	2,247	-	통장 수당 : 월 200천원 - 상여금 연 200% - 회의참석수당 1회 20천원(월2회) 반장 수당 연 50천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411	2,411	-	자치구 : 1,492천원(1인)×1,616명
공무원 일·숙직비		125	125	-	일직(1일당) : 50천원 이내 숙직(1야당) : 50천원 이내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7년 부평구는 지방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감액 현황에 해당없음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